

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조업자제선의 범위(제2조제3항 관련)

1. 동해조업자제선: 다음 각 목의 지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

- 가. 북위 38도 33분 09.83초, 동경 132도 34분 07.58초
- 나. 북위 38도 33분 09.84초, 동경 132도 59분 38.45초
- 다. 북위 38도 37분 09.82초, 동경 132도 59분 38.44초
- 라. 북위 38도 53분 09.71초, 동경 133도 02분 50.41초
- 마. 북위 39도 29분 09.48초, 동경 133도 26분 50.24초
- 바. 북위 39도 51분 54.35초, 동경 134도 11분 19.97초
- 사. 북위 40도 33분 09.16초, 동경 135도 59분 49.33초
- 아. 북위 42도 00분 08.60초, 동경 136도 49분 48.92초
- 자. 북위 42도 00분 08.60초선

2. 서해조업자제선: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

- 가. 북위 37도 55분 09.86초, 동경 123도 59분 53.41초
- 나. 북위 37도 40분 09.97초, 동경 123도 59분 53.41초
- 다. 북위 37도 40분 09.96초, 동경 123도 10분 13.69초
- 라. 북위 37도 20분 10.09초, 동경 123도 02분 53.73초
- 마. 북위 37도 00분 10.23초, 동경 122도 50분 08.81초
- 바. 북위 37도 00분 10.23초, 동경 122도 50분 08.81초에서 정서쪽으로 중국 산둥반도 동단과 만나는 점